성주군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년 7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제정이유

○ 성주군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)

-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
- 우수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표창 및 시상
- 기업 단체의 창립 권장 및 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
-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및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
나. 예산조치 : 20,000천원 정도
다. 성별영향평가 : 원안가결
라. 규제심사 : 원안가결
마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.(2015. 5. 28. ~ 2015. 6. 18.)
바. 보조금심의위원회 : 원안 가결(2015. 6. 12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하여 성주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에 대한 예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기업”이란 군에 본사・지사・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.
2. “기업인”이란 군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.
3. “기업관련단체”란 기업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기업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.

제4조(기업 등의 지원) 성주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대해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
2. 우수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표창 및 시상
3. 기업 단체의 창립 권장 및 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
4.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및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
5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·재정적 지원

제5조(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) 군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제외대상) 군수는 기업, 기업인 및 기업관련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한다.

1.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
2. 부도 등으로 3개월이상 휴·폐업중인 경우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